

급진민주주의: 재점화를 위한 시론

김주형(서울대 정치외교학부)

I. 머리말

이 논문은 최근 민주주의에 관한 담론 지형에서 상당히 위축된 경향을 보이는 ‘급진민주주의’(radical democracy)의 재점화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다지려는 시도이다. 주요 급진민주주의자들의 핵심적인 문제의식과 이들에게 자주 제기되는 비판적인 논점 및 이에 대한 대응을 재구성하면서, 급진민주주의가 대표제,¹ 헌정주의, 법치 등과 강하게 연동된 민주주의에 대한 표준적인 이해 방식과 다른 하나의 생명력 있는(viable) 관점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관점은 민주주의의 담론장을 풍부하게 하고 혁신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에 중요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을 보이려고 한다.

현재 확산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 내지는 ‘퇴행’에 대한 진단은 자유헌정민주주의로 표상되는 표준적인 민주주의 모델의 담론적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종종 ‘민주주의의 과잉’에 대한 우려로 표출된다. 과도한 정치적 열정과 대중동원에 기대어 기존의 절차와 제도를 우회하는 ‘매개 없는 정치’(unmediated politics)가 갈등의 증폭과 민주주의의 기반 침식으로 연결된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진단은 헌정주의와 법치의 원리에 의해 제약되고 선거-정당-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표민주주의의 정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처방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위기’ 징후가 관찰되는 상황에서 표준적인 민주주의 모델의 ‘복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는 데에는 역설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전통적인 정치과정과 분석틀을 넘어서는 정치적 동학이 일상화되고, 기존의 모델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누적되는 현재 상황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그 제도적 발현을 새롭게 상상하고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것이라 예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급진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표준적인 관점을 문제화하고 그것이 비가시화하는 지점들을 드러내며, 대안적인 정치적 상상력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급진민주주의자들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주변화된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국내에도 아래에서 언급하는 이론가들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다. 하지만 개별 저자들에 대한 논평을 넘어 급진민주주의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내적 긴장과 실천적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를 찾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²

이 논문의 목표는 급진민주주의가 민주주의에 대한 응집력 있는 대안적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다. 적절히 재구성될 경우 급진민주주의는 자유주의, 헌정주의, 대표민주주의 등 다른 지적, 정치적 전통을 그 중심부에 이식하여 접합하지 않고도 하나의 매력적이고 자립적

¹ 통상적으로 ‘representation’은 ‘대표’로, ‘representative democracy’는 ‘대의민주주의’로 번역된다. 그러나 표현의 일관성이나 의미의 왜곡 방지를 위해 관련 용어를 ‘대표민주주의’, ‘대표제’ 등으로 옮기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² 관련 주제들에 대해 오랫동안 천착해 온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진태원(2017)을 들 수 있다. 해외의 단행본 중에서는 Breugh et al. (2015), Little and Lloyd (2009), Tønder and Thomassen (2005) 등을 우선 참고할 수 있다.

인 민주주의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급진민주주의가 자유주의, 헌정주의, 대표민주주의와 반드시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아래의 논의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급진민주주의를 어떻게 개념화할지에 대해 토론한다(II). 급진민주주의를 하나의 민주주의관으로 성립하게 하는 핵심적인 속성에 대한 분석이다. 다만 이 논문은 급진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급진민주주의자들이 널리 공유하는 지향을 재구성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논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급진민주주의를 둘러싼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 급진민주주의자들에게 자주 제기되는 비판과 이에 대한 대응을 세 가지 키워드로 구조화한 것인데, 민주주의의 존재론적 지위(III), 제도와 헌정의 문제(IV), 집합적 정치주체화의 양상(V) 등 세 논점이 제시된다.

이 논문은 급진민주주의의 재점화를 위한 시론으로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명료화하고 추후 본격적인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려는 제한된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제시되는 모든 논점들에 대해 선명한 결론을 내리거나 언급되는 이론가들을 충분히 밀도 있게 다루지는 못한다. 그러나 토론을 거치면서 급진민주주의 내부의 다양성과 긴장을 드러내고, 비판적 논점들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할 것이다. 급진민주주의를 전적으로 옹호하거나 폐기하기보다는 그 중심적인 문제의식을 비판적이면서도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다.

II. 급진민주주의, 급진민주주의자

급진민주주의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면서 당장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분석의 대상 자체가 자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급진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착된 담론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과 사회에 대한 대부분의 개념이 유동성과 불확정성, 수행성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급진민주주의의 경우 이 어려움이 상당한데, 예컨대 ‘자유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등의 개념들과 비교해봐도 더욱 그러하다.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문헌에서도 급진민주주의의 내포와 외연을 명쾌하게 정리한 경우를 찾기 어렵다.

급진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장 의식적으로, 또 꾸준히 사용해온 이론가 중 한 명은 무페(Chantal Mouffe)이다. 라클라우(Ernesto Laclau)와 함께 1985년에 출간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저서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의 부제가 다름 아닌 “급진 민주주의의 정치를 향하여”(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였고, 이 책의 핵심적인 논제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급진화’할 것인가의 문제였다(Laclau and Mouffe 2001). 그러나 설령 가장 현저한, 혹은 가장 오래된, 사용자나 주창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또는 그녀가 이런 개념을 배타적으로 전유할 특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급진민주주의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주요 연구들에서도 무페나 라클라우가 아주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는 없어 보인다.

마찬가지로 급진민주주의자들의 명단에 누가 들어가고 빠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합의된 바가 없고, 그 경계에 대해 명시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찾기 어렵다. 자주 언급되는 이론가들도 자신을 급진민주주의자로 굳이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개념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두기를 꺼리는 태도에서 급진민주주의자들이 예외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적인 급진민주주의자들의 잠정적인 목록을 만들어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라클라우와 무페, 윌린(Sheldon Wolin), 네그리(Antonio Negri)와 하트(Michael Hardt), 카스토리아디스(Cornelius Castoriadis), 아방수르(Miguel Abensour),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 발리바르(Etienne Balibar)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버틀러(Judith Butler)나 브라운(Wendy Brown), 코넨리(William Connolly) 등을 더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바로 드러나는 사실은 이 그룹의 내부적인 다양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논점에 대한 견해차를 열거하기 시작하면 도저히 하나의 집단으로 묶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것이다. 누군가가 이 목록에 왜 포함되거나 누락되었는지의 문제는 물론 간단치 않다. 예컨대 급진민주주의의 이론적 자원에 대한 논의에서 아렌트(Hannah Arendt)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Breugh et al. 2015), 민주주의에 대한 아렌트의 모호한 태도를 고려하면 꽤 논쟁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명시적으로 ‘해방’과 ‘변혁’, 또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주창하는 발리바르가 급진민주주의자들의 목록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다. 지젝(Slavoj Žižek)이나 바디우(Alain Badiou)도 썩 자주 언급되지는 않는데, 이들에게는 애당초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기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크게 의아한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관찰을 경유하면서 ‘도대체 급진민주주의가 무엇인가’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그러나 급진민주주의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을 위해 그 정의를 도출하는 작업을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이 논문은 초점을 다소 달리하는 질문, 즉 ‘급진민주주의자로 불리는 이론가들의 사고에서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가’의 질문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달리 말하면 ‘무엇’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는 방식의 정식화를 지향하기보다는, 급진민주주의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느슨하게나마 묶어낼 수 있는 개념적 혹은 성향적 최소치를 포착하여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접근할 경우 개념의 중핵이 다소 흐려지고 외연이 넓게 설정되는 문제가 없지 않다. 하지만 장점도 있다. 우선 안정되지 않은 담론장을 다루면서 지나친 선명성을 추구하게 되면 개념적 논쟁이 비대해지면서 구체적인 논점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대신 명쾌한 개념화를 일단 보류하면서 외연을 넓게 잡는 방식을 택할 경우 급진민주주의 내부의 다양성을 최대한 포괄하면서 비교와 논쟁의 지점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토론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상을 고려하여 이 논문은 대표적인 급진민주주의자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소 느슨하게 이해된 급진민주주의의 담론장을 관통한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논점들을 중심으로 여러 이론가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토론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이 작업은 급진민주주의라는 담론장 밖에서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참여자로서 불안정한 담론장 안으로 들어가 이를 재구성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급진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보다 급진민주주의자들이 던지는 질문과 그들에게 제기되는 비판, 그리고 이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서 현대 민주주의의 도전과 한계, 미래에 대한 고민을 최대한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렇다면 급진민주주의자들이 널리 공유하는 이론적, 성향적 최소치는 무엇인가? 이들의 사고와 지향이 어떤 면에서 ‘급진적’이길래 이들을 급진민주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 논문은 급진민주주의의 최소치를 ‘정치적’ 급진성과 ‘철학적’ 급진성 두 가지로 제시한다.

먼저 ‘정치적 급진성’이다. 급진민주주의자들의 민주주의 이해는 통치의 관점보다는 시민의 관점을 우선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통치의 관점에서는 갈등해소, 사회통합, 질서유지 등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 있지만,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의미도 목표도 아니라는 생각이다. 물론 어느 사회에서건 집합적 삶을 조정하는 넓은 의미의 통치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급진민주주의자들은 사회적 갈등을 반드시 최소화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을뿐더러, 정치과정을 특정한 자격(지식, 덕성, 신분, 재산 등)을 갖춘 사람 혹은 집단에게 외주하지 않

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사고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반대로 제도와 헌정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와 정치적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에서 국가중심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한계를 갖는다는 입장이다.

이 측면에서의 급진성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원을 그 준거로 삼는 데에 있다. ‘Radical’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뿌리’를 뜻하는 라틴어 ‘radix’인 것을 상기하면, 급진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경험이라는 ‘뿌리’로 돌아가 그 원리를 현대의 조건 하에서 실현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월린, 랑시에르, 발리바르 등 다수의 급진민주주의자들이 아테네 민주주의를 자주 언급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여러 흠결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집합적 정치주체로서 데모스의 자기지배가 상당한 정도로 실현되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인상적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평등을 무력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이 성취는 과감한 행정구역 개편, 추첨-순환-짧은 임기가 결합된 공직 배분 방식, 엄정한 감시와 감사를 중심으로 하는 책임성 메커니즘 등 여러 제도적 장치가 조합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아테네 민주주의의 원리를 집약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이소노미아’(isonomia)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시민들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적 법치(democratic rule of law)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Cartledge 2018). 이처럼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원리는 공적인 문제에 대해 토의하고 결정을 내리며 집행하는 과정에 직접, 평등하게 참여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역량에서 찾아야 한다.

아테네 민주주의를 직접적인 준거로 삼지 않는 경우에도 급진민주주의자들은 집합적 자기지배의 원리와 실천에 큰 관심을 보인다. 민주주의를 애당초 여러 정치체제 중 하나로 좁게 이해해서는 안 되며, 더군다나 다수결과 같은 특정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환원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민주주의를 다수결, 그것도 빈자들의 지배와 동일시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한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비판자들이었다고 보아야 한다.³ 이 지점을 가장 선명하게 주장하는 이론가 중 한 명은 바로 랑시에르이다. 그는 민주주의가 “하나의 정치체제”(a political regime)가 아니라 “정치라는 체제 그 자체”(a regime of politics itself)라고 주장하는데, 모든 특권적 지배(arkhê)의 원리로부터의 단절을 그 요체로 한다(Rancière 2001).

한편 급진민주주의자들의 ‘급진성’은 이들의 철학적 지향을 가리키기도 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20세기 후반 이후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근대적 사유를 넘어서려는 철학적 시도가 여러 갈래로 진행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급진민주주의와 관련해 가장 직접적인 배경을 이루는 흐름은 특히 20세기 중반 유럽을 지배했던 전통적 맑시즘, 기능주의, 구조주의 등의 지적 전통에 대한 비판이다. 비판의 핵심은 이러한 지적 조류가 경제, 종교, 계급 등의 우선성을 전제하면서 정치의 부차적 내지는 종속적 성격을 당연시한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그다지 널리 읽히지는 않지만 이 주장을 가장 영향력 있게 펼친 정치철학자로 르포르(Claude Lefort)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정치사와 정치철학을 접목하는 독특한 작업을 통해 ‘사회적인 것을 설립’하는 근원적 심급으로서 ‘정치적인 것’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킨다(Lefort 1988). 당시 좌파 내부의 논쟁에서 일군의 이론가들이 이후에 포스트-맑시즘으로 명명되는 관점을 제시하게 되는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맑시즘의 결정론적, 물질주의적 분석틀이 더는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20세기에 걸쳐 현존했던 사회주의 실험이 노정한 문제점들을 직시하면서 그간 누락되었던 민주주의의 관점을 중심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³ 민주주의 비판의 긴 역사에 대해서는 김민철(2023) 참조.

여기서 짧게 요약하기 어렵지만, 급진민주주의자들이 당시 철학적 논쟁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사회적인 것의 비결정성(indeterminacy)과 우발성(contingency)이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라클라우와 무페의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의 중심적인 장의 제목이 바로 “사회적인 것의 실정성을 넘어서”(Beyond the Positivity of the Social)이다(Laclau and Mouffe 2001, 93-148).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물질적 조건과 상징적 질서를 관장하는 초월적인 토대 내지는 필연적인 역사의 법칙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비결정적이고 우발적인 사회관계에 잠정적으로 형태를 부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정치적인 것’의 작용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고가 차이와 갈등의 편제성에 대한 인식을 경유하여 정치적인 것의 우선성에 대한 강조로 이어진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이해된 ‘정치적인 것’이 전면화될 수 있는 유일한 집합적 자기조직 방식이다. 권력의 축이 한편으로는 법과 규범을,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과 진리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Lefort 1988). 따라서 다수의 급진민주주의자들은 민주주의가 하나의 통치 방식 내지는 정치체제이기 이전에 사회의 한 형태(a form of society)라고 개념화한다. 이들은 정치적 실천 및 제도의 수행성과 역사성,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상징체계의 중요성, 또 이 두 계기들 사이의 밀접한 관련에 주목한다. 서로 맥락은 다르지만 라클라우와 무페가 사용하는 ‘담론’ 개념이나 랑시에르가 말하는 ‘감각적인 것의 나눔’과 같은 표현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한발 더 나아가 급진민주주의자들은 사회적인 것의 비결정성과 우발성,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차이와 갈등을 그저 극복 내지는 관리되어야 하는 문제로 보지 않고 정치공동체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산적인 자원으로 인식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마키아벨리를 자주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강조하면서 정치과정을 매끈하게 관리하려는 시도는 기존 질서-랑시에르의 표현을 따르자면 ‘치안’-에 대한 도전을 허락하지 않는 배제와 억압의 전략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 급진민주주의자들의 정치적, 철학적 지향을 간략히 소개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상의 논의는 급진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시도는 아니었다. 대신 급진민주주의자라고 불리는 일군의 이론가들이 널리 공유하는 지점들을 환기하면서 급진민주주의 담론장의 윤곽을 그리고 ‘밖’과의 경계를 그어본 것이다. 이제 다음 절부터는 급진민주주의의 ‘안’으로 들어가 세 가지 논점(민주주의의 존재론적 지위, 제도와 헌정의 문제, 정치주체화의 양상)을 제시한다.

III. 민주주의의 존재론적 지위

급진민주주의에 대한 첫 번째 쟁점은 민주주의의 존재론적 지위에 관한 것이다. ‘존재론적 지위’라는 표현이 거창하지만, 논점 자체는 비교적 선명하다. 많은 급진민주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예외적이고 순간적이며 비상한(extraordinary) 것으로 이해한다. 즉 민주주의는 통치와 규율, 질서를 목표로 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그러한 정치적 목표들에 대한 도전과 위반의 순간을 가리킨다는 생각이다. 예컨대 ‘치안’(police)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정치’(politics)를 내세우고, ‘정치’를 ‘민주주의’와 사실상 치환가능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랑시에르의 이론적 작업이 이러한 관점을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급진민주주의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접근은 ‘정치’(politics)와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의 구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들에게 ‘정치’는 일상적인 의미의 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일련의 제도, 담론, 관행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집합적 삶을 규율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이에 비해 ‘정치적인 것’은 정치의 심층 혹은 존재론적 차원을 지칭하는데, 근원

적 갈등과 열정에 의해 추동되는 원초적 정치행위의 영역을 지칭한다. 이 구도에서 급진민주주의자들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정치’에 가두기를 거부하면서 ‘정치적인 것’의 충위를 강조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를 여러 정부형태 혹은 통치방식 중 하나로 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특히 잘 드러내는 이론가로 월린을 들 수 있다. 그는 민주주의가 본성상 ‘탈주하는’(fugitive) 성격을 가진다고 말하고, ‘간헐적’(occasional), ‘드문’(rare), ‘찰나의’(episodic), ‘예외적인’(exceptional) 등의 형용사를 동원하여 그 특징을 설명한다(Wolin 1994a).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요체는 기존의 정치 질서에서 배제되고 억압된 자들이 그 질서가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자리와 기능을 거부하는 ‘위반 행위’(transgressive acts)에 있다는 것이다. 랑시에르의 표현으로는 “몹 없는 자들의 몹”을 요구하는 행위, 혹은 기존의 “감각적인 것의 짜임”을 거부하는 파열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Rancière 1999). 네그리와 하트, 카스토리아디스, 아방수르, 발리바르 등도 공히 봉기(revolt), 위반(transgression), 반란(insurrection) 등의 개념과 민주주의의 내적 연관을 강조한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지속성을 가지는 통치의 방식이 아니라 “일시적인 성공밖에 못 거둔 운명에 처해진 쓰라린 경험”으로 표현된다(Wolin 1994a, 23).

이처럼 ‘사건’(event)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급진민주주의자들의 입장은 특정한 민주주의의 존재론을 전제한다. 이들은 ‘정치’ 내지는 ‘사회적인 것’과 구분되는 ‘정치적인 것’의 자율성과 우선성에 주목하고, 이렇게 포착된 정치적인 것의 존재론적 지위에 민주주의를 위치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급진민주주의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법, 제도, 구체적인 정치과정 및 행위자에 대한 분석과는 달리 상당히 높은 추상수위에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속성은 여러 급진민주주의자들에게 중요한 영감을 제공한 아렌트의 ‘행위’(action)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Arendt 1958). 그녀는 ‘노동’이나 ‘작업’과 구분되는 행위 개념을 통해 정치의 의미를 설명하고, 행위를 통한 ‘드러남’(appearance)의 영역으로서 공적 공간을 이해한다.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법·제도를 통한 사회적 삶의 조정은 이 구도 내에서 행위보다는 작업에 가까운 것으로서 ‘전(前)정치적’인 현상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주의 존재론은 상당한 비판에 직면한다. 우선 정치가 사회의 다른 영역 내지는 활동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이들에 존재론적으로 우선한다는 관점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주의를 다른 형태의 정치와는 존재론적인 지위에서부터 구분되는 특별한 무언가로 보는 관점에 대한 해명도 요청된다. 애당초 정치적인 것과 민주주의를 사실상 서로 치환가능한 개념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이러한 질문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추상수위가 높은 철학적 검토가 필요한데,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존재론적 차원의 명제가 철학적으로 명징하게 입증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인지가 애당초 불확실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존재론의 철학적 타당성 자체를 따지기보다는 그 효과를 묻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특정한 존재론적 전제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정치 현실을 분석할 경우 어떠한 이론적, 실천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생산적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논의의 방향을 설정할 때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때로는 순수한 것으로 이해되는 민주주의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명제가 이른바 ‘현실로부터의 도피’로 이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사회적 삶의 조건으로부터 동떨어진 순수한 정치적 순간에 대한 낭만주의가 깔려있다는 혐의이다. 이 질문을 가장 통렬하게 제기한 비평가는 맥네이(Lois McNay)이다(McNay 2014). 그녀는 급진민주주의자들이 자유와 평등을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와 권력의 문제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표현을 빌려 이들의 작업이 ‘사회적 무중력 상태’(social weightlessness)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추상적인 이론 작업을 통해 정치와 민주주의의 개념적 순수성을 구축하려다 보니 일상적 삶의 구체적인 실천과 이를 조건짓는 요소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결여하게 된다는 문제제기이다. 특히 현대 사회의 불평등, 부정의, 지배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화가 누락되는 경향을 강하게 우려한다. 맥네이에 따르면 ‘권력 비판’으로서의 사회이론을 결여한 민주주의 이론의 결정적인 문제는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혹은 정치적인 것의 순간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조적인 불평등과 부정의에 장기적으로 노출된 자들이 무기력, 절망, 체념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과연 기존 질서에 대한 집합적 저항을 위한 인지적, 물질적, 동기적 자원을 어떻게 갖추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이다. 정치주체화를 위한 ‘가능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채 예외적인 위반행위의 순간이 역사의 결정적인 국면에 신비롭게 도래하는 것처럼 낭만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급진민주주의자들에게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이 비판을 건설적으로 수용할 여지가 없지 않다. 급진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폐기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삶의 구체적인 경험과 이를 구조화하는 조건들을 중요한 분석의 축으로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즉 급진민주주의 내부에 적절한 방식으로 비판적 사회이론을 장착할 여지는 없는가? 이러한 고려는 존재론적 수위에서의 논의로부터 급진민주주의의 이론적 초점을 다소간 이동할 필요성을 함축한다. 달리 말하자면 ‘철학적’ 급진성보다는 ‘정치적’ 급진성을 중심에 두고, 불평등, 부정의, 지배에 대한 분석을 중요하게 포함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수정 내지는 확장을 위한 이론적 자원은 몇몇 급진민주주의자들에게서 이미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랑시에르를 들 수 있다(Rancière 1999). 통상 랑시에르의 ‘치안’ 개념은 ‘정치’와 상극에 있는 것으로서 지배나 억압의 동의어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때 그의 정치와 민주주의 이해는 일상적인 정치과정을 백안시하는 예외적인 순간에 대한 낭만주의적인 지향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랑시에르의 관점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볼 근거는 충분하다. 그가 말하는 정치는 치안과 완전히 구분되는 존재론적 지위나 그 자체에 특수한 대상을 갖는다기보다 치안‘에 대해’ 작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드문 것으로서 정치의 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변화시킨 (혹은 변화시키는 데에 실패한) 치안이 사회적 삶의 지평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치안은 그저 해방의 걸림돌로서 제거하거나 최소화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더 좋거나 나쁜 것일 수 있다(Rancière 1999, 87-90). 마찬가지로 이유로 랑시에르가 치안의 문법으로서 법과 권리의 언어를 배제와 억압의 도구로 단순하게 이해한다는 일반화도 성립하지 않는다. 요컨대 예외적인 위반행위로 정치를 이해하는 랑시에르의 경우에도 법과 제도의 문제를 포함하여 정치세계를 조건짓는 요소들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는 발리바르의 경우도 흥미롭다. 발리바르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에 저항과 봉기의 계기를 지칭하는 ‘해방’(emancipation) 개념이 자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강조되는 것은 정치를 규정하는 물질적, 상징적 조건들을 변화시키려는 ‘변혁’(transformation)의 정치인데, 이는 지배구조 및 권력관계의 개혁을 추구하는 정치로서 법과 제도의 문제를 중심적인 대상으로 한다(Balibar 2002).

랑시에르와 발리바르의 경우를 짧게 언급한 것은 앞서 소개한 이른바 ‘사회적 무중력 상태’의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급진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예시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의 사례는 사회이론의 관점에서 더 섬세한 작업을 위해 급진민주주의자들의 민주주의 이해의 근간을 폐기할 필요도, 급진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외부의 지적, 정치적 전통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지금까지 급진민주주의자들의 이론화에 이러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억지스럽지 않다는

점은 강조되어야 한다.

IV. 제도와 헌정의 문제

급진민주주의의 이론적 발전을 위해 고민해야 할 두 번째 쟁점은 제도와 헌정의 문제이다. 예외적인 저항의 순간에 주목하는 급진민주주의자들은 민주주의가 그 속성상 ‘무정형적’(formless)이라는 견해를 견지한다. 민주주의는 집합적 삶의 형식을 재편하는 ‘구성권력’(constituent power)에 해당하는 것이지,⁴ 그렇게 구성된 공동체가 관리되는 통치의 기술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한 번 더 랑시에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민주주의는 기존 질서가 부과하는 ‘감각적인 것의 짜임’을 거부하고 ‘공통의 무대’를 다시 짜려는 시도를 가리킨다.

구성권력은 여러 급진민주주의자들의 정치적 상상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개념이다(Popp-Madsen 2022). 앞의 절에서도 소개된 것처럼 이들이 보기에 민주주의는 타율적으로 부과된 질서를 허물고 새로 짓는 역량을 우선적으로 가리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구성된 권력’(constituted power) 혹은 ‘헌정권력’(constitutional power)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구성권력’은 인민의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힘에 근거하며, 주로 정치적 위기나 혁명의 순간에 발현된다. 이런 의미에서 네그리는 “구성권력에 대해 말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고 쓰고(Negri 1999, 1), 칼리바스(Andreas Kalyvas)는 “구성권력은 곧 민주주의의 진실이다”고 선언한다(Kalyvas 2013). 이처럼 상당수의 급진민주주의자들은 민주주의와 제도·헌정을 대립적인 관계로 이해한다. 구성권력으로 대변되는 민주주의의 순간을 자유, 행위, 창조, 자기지배와 연계하고, 이와는 반대로 제도화된 정치를 위계, 관료화, 불평등, 억압으로 표상하는 이분법적 관점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경우 제도와 헌정은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운영원리가 아니라, 정해진 틀과 질서, 즉 특정한 형식(form)에 민주주의를 가두어 그 분출을 억압하는 권력의 작용으로 이해된다.

민주주의와 헌정의 대립 구도를 가장 선명하게 제시하는 이론가는 월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민주주의가 그 본성상 불안정하며 무정부적이라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자고 제안하며, 자신이 말하는 위반행위로서 민주주의의 비전을 ‘무정형의 민주주의’(formless democracy) 내지는 ‘무헌정적 민주주의’(aconstitutional democracy)로 부르기도 한다(Wolin 1994b). 네그리 또한 구성권력을 모든 헌정실서 외부에 존재하면서 제도화를 거부하는 원초적 정치권력으로 개념화한다(Negri 1999). 아방수르는 한발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장치로서 국가를 특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의 형식으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국가와 행위로서 인민의 삶 사이에 투쟁이 발생한다. 이 투쟁에서 민주주의는 자신의 영원한 적이 바로 국가라는 형식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Abensour 2011, 94). 이러한 관점은 앞의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주주의를 예외적인 저항의 순간으로 파악하는 급진민주주의자들의 관념과 물론 연결되는데, 여기에는 민주주의가 애당초 스스로를 제도화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러나 구성권력에 주목하는 급진민주주의자들의 민주주의 이해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된다. 그 요지는 제도화에 대한 관심을 결여한 민주주의가 과연 어떻게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극적으로 분출하는 직접행동이나 저항운동의 예외적인 순간들을 민주주의의 요체로 제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주장들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사회적 삶에 안착하게 되는 방법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도

⁴ 이 개념은 통상 ‘제한권력’이나 ‘제정권력’ 등으로 번역되지만, 여기서는 이 절에서 주목하는 넓은 정치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 ‘구성권력’으로 옮겼다.

화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모든 형식, 제도, 통치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억압과 반역, 지배와 혁명의 극단적인 순환을 벗어날 경로를 제시할 수 없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이것은 급진민주주의자들이 무정부주의나 공동체주의적 자치에 대해 순진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다. 이와는 별개로 어떤 방식의 정치적 삶에 있어서도 작동할 수밖에 없는 법과 제도의 문제를 애당초 개념적으로 민주주의 밖에 위치시킬 때, 다양한 제도와 통치의 방식들이 가지는 상이한 정치적 효과에 대한 분석과 규범적 판단을 방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모든 급진민주주의자들이 이러한 비판에 치명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민주주의 존재론의 문제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제도화와 관련해서도 급진민주주의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핵심적인 전제와 지향을 견지하면서도 나름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카스토리아디스는 제도가 반드시 지배와 규율, 관료화와 엘리트주의를 뜻한다는 견해는 편협하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민주적인’ 제도화의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급진민주주의가 내세우는 자율성, 창발성, 적극적인 참여 등의 원리에 준하는 헌정화와 제도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혁명적인 사회의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제도와 작동 양식의 네트워크를 스스로 갖추어 나가는 것”이고, 이러한 제도들이 시민들로부터 상시적으로 “영웅적인 위업”을 요구해서는 곤란하다는 점 또한 강조된다(Castoriadis 1993, 262).

발리바르의 민주주의 이론 또한 상당히 유용한 자원을 제공해준다(Balibar 2014, 2015a). 발리바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방’의 정치뿐만 아니라 ‘변혁’의 정치를 마찬가지로 강조하는데, 이는 그의 민주주의관이 단순한 형태의 일원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반대로 발리바르는 ‘반란의 정치’(insurrectional politics)와 ‘헌정의 정치’(constitutional politics)라는 두 계기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에 주목한다. 예컨대 프랑스 혁명 당시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주창하는 보편적 가치는 그 현실화를 위해서 법과 제도의 형식으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근대 국민국가의 시민권이라는 형태로 제도화된 권리 체계는 외부자들(외국인, 여성, 노동자 등)을 배제하는 문제를 낳게 된다. 그런데 발리바르는 이 두 계기들 사이의 이율배반이 바로 더 많은 민주화를 추동하는 동력이라고 본다. 자유주의자들이 민주주의의 봉기적 성격이나 집합적 실천의 측면을 경시하면서 인권과 같은 전정치적 토대나 입헌국가와 같은 제도로 회귀하는 경향 보이는 반면, 다수의 급진주의자들은 정치를 해방과 변혁을 위한 투쟁 내지는 혁명과 동일시하는 반대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발리바르의 생각이다.

앞서 잠시 언급한 정치와 치안의 관계에 대한 랑시에르의 관점도 유사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의 민주주의 이론은 ‘정치 없는 치안’이라는 디스토피아를 폭로할 뿐만 아니라, ‘치안 없는 정치’가 애당초 개념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또한 보여준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실천적 과제는 정치의 작용을 통해 치안의 경화를 제어하는 것이라고 표현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저항과 도전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계기 중 하나가 다른 아닌 법과 권리로 구체화되는 보편의 언어이다(Rancière 1999, 100-101). 이 논의는 다시금 아렌트의 정치관을 떠올리게 한다. 아렌트는 명시적으로 제도와 헌정의 문제를 다루는 『혁명론』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조건』 곳곳에서도 이 주제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아렌트가 법을 ‘행위’가 아닌 ‘작업’의 범주로 분류하면서 그 전(前)정치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에서 법이 중요하지 않거나 부차적이라는 취지가 아니다. 인간의 삶에서 작업이 가능케 하는 세계의 안정성과 영속성 없이 행위에 내재한 무상함과 취약함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처럼, 법이 제공하는 공동생활의 틀은 행위로서의 정치와 공적 자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필수불가결한 울타리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카스토리아디스, 발리바르, 랑시에르를 경유한 위의 토론은 급진민주주의자들도 제도와 헌정의 문제를 정합성 있게 이론화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예시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다른 방식의 대응도 가능하다. 즉 급진민주주의가 제도의 문제를 중심에 두는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전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위반행위와 급진적인 정치적 저항의 의미를 계획, 대안, 정책, 지속가능성 등 표준적인 정치과정의 틀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생각은 여러 급진민주주의자들에게서 다소 산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특히 데리다(Jacques Derrida)나 랑시에르에게서 중요한 이론적 자원을 얻은 아르디티(Benjamín Arditi)가 그 취지를 잘 집약한다(Arditi 2015). 아르디티에 따르면 분노하고, 모여서 이야기하고, 거리로 나서기도 하는 일련의 활동은 일종의 '원초적 정치행위'에 해당한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정교한 청사진을 가지고 출발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제도화로 안착되지 못할 때도 많다. 하지만 기존의 짜임에 대한 도전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공동체의 정치적 상상과 인지 지도(cognitive map)를 바꾸어 궁극적으로는 기존 질서의 재편에 기여하는 경우도 역사적으로 드물지 않다. 즉 위반행위로서 민주주의의 기여는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살려내는 데에 있다는 생각이다. 심지어 '실패'한 시도도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유산을 남기느냐는 그 순간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위자들 및 조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사후에 어떻게 계승 내지는 망각되느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나 성패 여부만 따져 묻는 것은 변혁적인 정치운동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애당초 초점이 안 맞는 비판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절에서는 급진민주주의에 자주 제기되는 두 번째 비판으로서 제도와 헌정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일부 급진민주주의자들이 제시하는 구성권력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다소 부풀려진 이해가 이러한 비판에 취약할 수 있지만, 급진민주주의가 제도화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다루지 못한다고 볼 근거는 약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정책화될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된 계획과 대안을 제시하라는 요청은 민주적 상상과 실천의 폭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V. 정치주체화의 양상

세 번째이자 마지막 논점은 정치주체화의 문제이다. 급진민주주의자들은 정치공동체의 구성과 운영에 형성적 힘을 행사하는 집합적 정치주체의 문제를 전면에 부각한다. 이 관점이 개인의 권리 보호와 사적 자율성을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적 정치관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급진민주주의자들의 관점은 최근 자주 언급되는 공화주의와도 사소하지 않은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비지배(non-domination)로서의 자유에 있어서는 정치주체의 문제가 중심적인 요소로 다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공화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가 자의적인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목표의 달성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공적 혹은 사적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는 촘촘한 법체계가 갖춰져 있더라도 그 법의 제정이나 집행에 시민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다지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공화주의적 목표가 달성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널리 통용되고 있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접근과는 달리 급진민주주의자들은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인민'(the people) 내지는 '데모스'(demos)의 역할에 주목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국면에서 정치주체로서 인민 혹은 데모스를 말하는 것은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포폴리즘'이라고 통칭되는 여러 현상을 포함하여 이른바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표출되는 상황에서 집합적 정치주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민의 기표는 실체가 불분명한 정치적 수사로 취급되거나, 단일적(unitary)이고 결단론적(decisionistic)인 형상으로 묘사되어 그 정치적 위험성을 부각하기 위해 언급된다. '일반의지' 내지는 '국민의 뜻'과 같은 개념으로 실체화되면서 반대자들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반대원적 동학을 내포한다는 비판이다.

물론 인민이라는 범주를 정치적 상상과 실천에서 추출하려는 노력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민주주의 비판자들에 의해 수천 년간 유통되어 온 인민의 이미지는 상당히 일관된다. 한편으로는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머리가 여럿 달린 괴물' 내지는 '눈먼 다중'의 비유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인민은 법이나 질서와 상극에 있기 때문에 현명한 지도자에 의해 길들여지고 지도받지 않을 경우 순식간에 공적 공간을 무너뜨리는 파괴적 존재로 표상된다. 중요한 점은 인민이 건설적인 공통의 행위를 할 역량이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다. 무차별적으로 파괴할 수는 있지만 무언가를 지을 수 있는 긍정적 행위자성은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행위자성을 갖는 존재로서의 인민은 하나의 의지로 통일된 집합체로 표상되는 경향이 강하다. 근대 이후 주권 개념과 결합되고 몇 차례의 혁명을 거치면서 이처럼 단일적이고 결단론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형상은 혁명과 같은 극적인 계기를 통해 연결되면서 미분화된 덩어리로 존재하는 인민의 파괴성이 부각되어왔다. 예컨대 프랑스 혁명에 대한 아렌트의 서술에서도 이 측면이 강조된다. 미국 혁명이 헌정질서의 수립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알린 것에 비해, 프랑스에서는 세속의 인민이 과거의 신의 자리를 대신하여 거역할 수 없는 일반의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렸다는 서사이다.

파괴적인 에너지 덩어리로서 인민의 형상은 근대 정치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관점에서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는 널리 유통되기 시작한 인민주권의 원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투표제도, 대표제, 권력구조 등의 설계를 통해 이른바 '매개된 주권'(mediated sovereignty)으로 제도화해 인민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자성을 중화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근대국가 체제가 확립되고 민족주의가 확산하는 과정에서도 인민주권의 원리는 여전히 호출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민족주권 내지는 국가주권으로 사실상 포섭 및 대체되는 흐름이 뚜렷하다(Bourke and Skinner 2016). 반대로 근대의 급진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은 해방운동의 주체로서 인민의 이름을 재전유하고 정치 무대로 소환하려는 시도를 반복한다. 통일된 의지의 담지자로서의 인민의 형상을 정치적 프로젝트로 전환하려는 노력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양극단의 대응, 즉 자유주의자들과 급진주의자들의 대응이 단일한 의지를 가진 집합체로서 인민이라는 같은 형상에 기반한다는 사실이다. 이 형상에 내재한 동일성의 논리가 자유주의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혁명가들에게는 희망의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인민의 개념사를 거칠게나마 짚어본 이유는 흥미롭게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폴리즘에 대한 논쟁에서도 유사한 구도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포폴리즘 관련 담론장을 주도하고 있는 자유주의 성향의 논자들은 인민, 인민주권, 일반의지 등이 전제하는 단일성의 논리가 무분별한 세력화와 대중동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회, 정당, 언론 등을 기반으로 하는 다원적 대표체제로 매개된 정치과정을 통해 그 파괴적 영향력을 희석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린다(Müller 2021). 반대로 상당수의 급진민주주의자들은 여전히 인민을 진보와 변혁의 주체로 호명한다. 대표적으로 라클라우와 무페는 현재 국면에서 좌파의 핵심적인 정치적 과제가 바로 과두제적인 기득권 세력과 선명한 전선 굵기를 통해 투쟁의 주체로서 인민을 구축해내는 것이라고 역설한다(Laclau 2005; Mouffe 2018). 이 과정은 분화된 채로 존재하는 복수의 요구들을 접합하는 헤게모니 프로젝트로

개념화되는데, 그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의 역할도 강조된다. 맥락은 다르지만 월린에게서도 유사한 정치적 논리가 관찰된다. 그가 말하는 ‘정치적인 것’의 핵심적인 요소는 흠여져 있는 억압과 부정의의 경험이 집합적인 정치운동으로 분출하는 ‘공통성’(commonality) 내지는 ‘동질성’(homogeneity)의 순간이다(Wolin 1994a, 24). 요컨대 오늘날에도 자유주의 성향의 논자들과 일부 급진민주주의자들에게서 공히 인민을 동일성과 단일한 의지의 집합체로 전제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급진민주주의의 이론적 발전과 실천적 기여를 위해 중요한 논점을 몇 제기한다. 한편으로 단일적이고 결단론적인 인민의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비판자들의 주장을 경청해야 할 근거가 충분하다. 신성한 절대자를 대신하는 신성한 인민이라는 정치신학적 범주가 해방의 주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더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러한 형태의 인민 개념은 민족, 국가, 인종 등의 집합체로 구체화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력화(empowerment)를 저해하는 형태의 배제적이고 억압적인 동원의 논리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라클라우와 무페 등이 제시하는 좌파 포퓰리즘의 중요한 한계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김주형·김도형 2020).

그러나 이 비판적 성찰이 집합적 정치주체라는 개념을 폐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Canovan 2005).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부터 일상적인 정치 수사에 이르기까지 인민 혹은 국민과 같은 전체에 대한 호명과 이에 기대는 정치 운동이 사라질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면, 이 범주 자체를 도외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분석에서 큰 공백을 남길 수밖에 없다. 또 인민이나 데모스 개념이 전제하는 대중동원과 일체화가 반드시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볼 필요도 없다. 대신 질문을 더 섬세하게 제기해야 한다. 즉 인민과 같은 정치주체가 호명되고 출현하는 것 자체를 불온시하기보다는, 집합적 동원과 일체화가 일어나는 방식과 양상을 더 세밀히 따져 인민의 민주적 등장을 퇴행적인 세력화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민이나 데모스와 같은 범주가 개별자들의 산술적인 합이 아니라 나름의 정체성과 행위자성을 가진 전체에 대한 지향을 보유한다고 해서 이들이 반드시 단일성, 미분화성, 만다원주의를 함축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이론적 과제는 앞서 언급한 전통적인 인민의 형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집합적 정치주체의 내적 동학과 행위자성을 유연하고 다층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일적이고 결단론적이지 않은 형태의 정치주체화 양상을 탐색하는 이론적 작업은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하나는 정치사와 정치사상사를 경유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서양 근대의 정치적 경험과 논쟁 속에서 그러한 사례를 발굴하여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영국 혁명 당시 수평파의 활동이나 미국 혁명을 전후한 시기 민중적 헌정주의(popular constitutionalism)의 흐름, 세계각국의 반제국주의 투쟁의 사례에서 보이는 인민의 모습 등을 생각해볼 수 있고, 요즘 포퓰리즘에 대한 논의에서도 가끔 언급되는 19세기 후반 미국 인민당(People's Party)이나 폴란드의 '연대'(Solidarity) 운동 등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은 급진민주주의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미 주목받은 바 있다(Canovan 2002; Frank 2010, 2017; Kalyvas 2013; Olson 2016).⁵

⁵ 이러한 사례들은 매우 흥미롭고 중요하지만, 건국, 저항, 혁명 등의 극적인 순간에 국한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런데 이처럼 예외적인 순간을 벗어나는 유연하고 다면적인 인민의 정치적 존재와 역할에 대한 이론화의 단초를 의외로 루소의 정치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흔히 루소는 단일적이고 결단론적인 인민의 형상을 제시한 사상가로 받아들여지지만, 『사회계약론』을 그의 다른 저술체계에 적절히 위치시킬 경우 그가 구상하는 정치과정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결론만 제시하자면, 루소는 통념과는 다르게 정치적 토의와 결정의 넓은 스펙트럼을 상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따금씩 민회에서 투표만 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언어로 '시민사회' 내지는 '공론장'에서 진행되는 자유로운 숙의, 토론, 항의를 포함한 의견개진뿐만 아니라 때때로 분출하는 집합행동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즉 루소의 정치사상은 인민의 정치적 존

이런 종류의 정치사 혹은 정치사상사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 논문의 맥락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작업은 현대의 급진민주주의자들로 돌아오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문제를 상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인민의 정치적 존재, 역할, 행위자성, 주체화 양식 등에 대해 서구의 정치사와 지성사에서 흔히 관찰되는 것과는 달리 유연하고 다층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집합적 정치주체화가 일어나는 여러 방식이 질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보이고, 그 차이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은 본 논문의 제한된 목표를 크게 넘어선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여러 이론가들에게서 정치주체화의 문제를 낚아스 있게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이 상당히 발견된다는 사실은 언급할 수 있다. 예컨대 하트와 네그리가 발전시킨 ‘다중’(multitude) 개념은 민족과 같은 전정치적인 준거를 갖지도 않을뿐더러, 다원성, 부정형성, 참여성을 핵심적인 속성으로 갖는다(Hardt and Negri 2004). 이들이 제시하는 자율적인 역량을 갖춘 다중이 스스로 통치하는 네트워크로서의 민주주의는 상당히 매력적인 이미지이다. 그러나 이들의 분석은 다중의 정치적 역량을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다중 내부의 정치적 동학과 양가성을 충분히 섬세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랑시에르와 발리바르는 더 유용해 보인다. 특히 랑시에르의 정치이론은 정치주체화의 문제에 대한 풍부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가 말하는 주체화는 좁은 의미의 당사자성에 구속되지 않을뿐더러, 동질성의 소용돌이를 깨뜨리는 ‘탈정체화’(disidentification) 내지는 탈동일시가 핵심적인 계기로 제시된다. 랑시에르는 이렇게 구축되는 정치주체를 ‘다자’(multiple)로 부르기도 한다(Rancière 1999). 발리바르도 중요하다. 그는 예컨대 ‘피지배자들의 비지배적인 주체 되기’와 같은 표현을 쓰는데, 피지배자들이 스스로를 지배계급으로 구축하지 않으면서 해방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제시하려는 의도이다. 억압과 부정의에 직면하여 그저 대항권력을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다움’(civilité)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중요하다. 발리바르는 대중들의 역량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되, 이들의 양면성, 즉 새로운 정체를 구축하고 형성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 정체를 파괴할 수 있는 위협적 존재로서의 양가적인 속성을 정치체의 지속적인 개조와 변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Balibar 2015b).

여기서 마지막으로 강조할 지점은, 단일적이고 결단적인 거대주체에 대한 거부가 민주주의 밖에 있는 자유주의나 다원주의 전통으로의 흡수로 귀결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에 내재한 원리와 실천을 통해 유연하고 다층적인 정치주체화의 양상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언급한 몇몇 급진민주주의자들이 현재의 민주주의 담론장에 고유하게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때의 정치주체는 때로는 법과 제도의 형식성을 뛰어넘으면서도, 정치공동체의 문법을 만들고 지키는 계기를 스스로 구성하는 자기계약적 존재로 제시된다. 또 동원과 세력화의 수동적 대상으로 머무르지 않고 내부의 이질성, 다원성, 모순에 민감한 방식으로 집합적 역량을 구축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처럼 자력화를 핵심적 계기로 정치주체화의 물질적, 상징적 조건과 과정에 대한 섬세한 분석이 요청된다.

VI. 맺음말

재와 역할을 개인의 성찰에서부터 시민으로서의 의견 개진, 주권자로서의 투표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서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이 중에서 투표만이 오히려 주권자-입법자의 행위로서 지위를 갖지만, 숙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의 주체인 ‘시민’ 또한 다른 아닌 주권자 인민의 구성원들로 제시된다. 이러한 방향의 루소 독해를 위해서는 Kelly(2018)와 Verli(2018)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급진민주주의자들이 다층적인 도전에 직면한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을 확장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내부적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널리 공유하는 이론적 최소치를 제시하였고, 급진민주주의를 둘러싼 이론적 쟁점을 세 가지로 재구성하여 논의하였다. 이 세 논점 각각에 대해 외부로부터 제기되는 비판은 향후 급진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충분히 고려하고 대응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다. 다수의 급진민주주의자들에게 전제된 민주주의 존재론이 정치적 낭만주의 내지는 순수주의의 한계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또 '구성된 권력'을 부차화하고 '구성권력'에 주목하는 이들의 정향이 정치공동체의 설립과 운영을 논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제도와 헌정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민이나 데모스와 같은 집합적 정치주체를 구축하려는 이들의 노력이 배제적이고 억압적인 양상의 정치세력화와 친화력을 가지는 것은 아닌지의 문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 논문은 급진민주주의가 이상의 중요한 비판적 문제제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을 내부에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였다. 즉 자유주의, 헌정주의, 다원주의, 공화주의 등 다른 지적, 정치적 전통에 기대거나 그들의 지향과 분석틀을 중심부로 이식해오지 않고도 이상의 비판적 논점을 발전적으로 해소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은 물론 다각도로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급진민주주의자들의 정치적 사유에서 자주 관찰되는 이분법적인 경향을 극복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된다. 다수의 급진민주주의자들에게 민주주의 존재론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정치적인 것'과 '정치'의 이분법이, 제도와 헌정의 문제의 근간에는 '구성권력'과 '구성된 권력'의 대립 구도가 관찰된다. 정치주체화의 문제에서는 '하나'로서의 인민과 인민의 '해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가 제시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향후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이진법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각각의 쟁점에 대해 좀 더 섬세한 형태의 이론화를 진행하는 것일 텐데, 랑시에르나 발리바르 등 앞서 언급한 몇몇 이론가들에게서 이미 그러한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제한된 목표는 급진민주주의의 이론적 발전과 실천적 기여를 위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쟁점을 최대한 명료한 형태로 구성하여 제시하는 것이었다. 위의 논의는 각각의 논점에 대한 밀도 있는 토론과는 거리가 멀지만, 향후 그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론으로서의 역할은 감당하였기를 기대한다. 또 급진민주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중심적인 논점들, 예컨대 구성권력, 참여적 시민성, 집합적 정치주체, 정치적 자력화 등의 문제가 정치적 신념 체계나 이념지향을 가로질러 현대 민주주의가 처한 도전을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라는 점도 환기되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김민철. 2023.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지성사로 보는 민주주의 혐오의 역사』. 파주: 창비.
- 김주형·김도형. 2020.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인민의 민주적 정치주체화”. 『한국정치연구』 29권 2호, 57-90.
- 진태원. 2017. 『을의 민주주의: 새로운 혁명을 위하여』. 서울: 그린비.
- Abensour, Miguel. 2011. *Democracy against the State: Marx and the Machiavellian Moment*. Cambridge: Polity Press.
- Arditi, Benjamín. 2015. “Insurgencies Don’t Have a Plan – They Are the Plan: Political Performatives and Vanishing Mediators.” In Carlos de la Torre, ed. *The Promise and Perils of Populism: Global Perspectives*, 113-139. Lexington: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 Arendt, Hannah. 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alibar, Étienne. 2002. “Three Concepts of Politics.” In Chris Turner, trans. *Politics and the Other Scene*. London: Verso.
- _____. 2014. *Equaliberty: Political Essays*. Trans. James Ingra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_____. 2015a. *Citizenship*. Cambridge: Polity.
- _____. 2015b. *Violence and Civility: On the Limits of Political Philosophy*. Trans. G. M. Goshgari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ourke, Richard and Quentin Skinner. 2016. *Popular Sovereignty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eaugh, Martin, Christopher Holman, Rachel Magnusson, Paul Mazzocchi, and Devin Penner, eds. 2015. *Thinking Radical Democracy: The Return to Politics in Post-War Franc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Canovan, Margaret. 2002. “The People, the Masses, and the Mobilization of Power: The Paradox of Hannah Arendt’s “Populism”.” *Social Research* 69(2), 403-422.
- _____. 2005. *The People*. Cambridge: Polity
- Castoriadis, Cornelius. 1993. *Political and Social Writings 3*.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ornelius Castoriadis. 1997. *World in Fragments: Writings on Politics, Society, Psychoanalysis, and the Imagination*. Trans. and Ed. David Ames Curti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Cartledge, Paul. 2018. *Democracy: A Lif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rank, Jason. 2010. *Constituent Moments: Enacting the People in Postrevolutionary Americ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_____. 2017. “Populism and Praxis.” In Rovira Kaltwasser et al.,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pulism*, 629-64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rdt, Michael and Antonio Negri. 2004. *Multitude: War and Democracy in the Age of Empire*. New York: The Penguin Press.
- Kalyvas, Andreas. 2013. “Constituent Power.” In *Political Concepts: A Critical Lexicon* 3 (<http://www.politicalconcepts.org/constituentpower>).
- Kelly, Christopher. 2018. “Sovereign versus Government: Rousseau’s Republicanism.” *Acta Politologica* 10(2), 15-32.
- Laclau, Ernesto. 2005. *On Populist Reason*. London: Verso.
- Laclau, Ernesto and Chantal Mouffe. 2001[1985].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London: Verso.
- Lefort, Claude. 1988. *Democracy and Political Theory*. Trans. David Macey. Cambridge: Polity.

- Little, Adrian and Moya Lloyd, eds. 2009. *The Politics of Radical Democrac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McNay, Nancy. 2014. *The Misguided Search for the Political: Social Weightlessness in Radical Democratic Theory*. Cambridge: Polity.
- Mouffe, Chantal. 2018. *For a Left Populism*. London: Verso.
- Müller, Jan-Werner. 2021. *Democracy Rules*.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Negri, Antonio. 1999. *Insurgencies: Constituent Power and the Modern Stat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Olson, Kevin. 2016. *Imagined Sovereignities: The Power of the People and Other Myths of the Modern 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pp-Madsen, Benjamin Ask. 2022. "Non-Domination and Constituent Power: Socialist Republicanism versus Radical Democracy." *Philosophy & Social Criticism*. <https://doi.org/10.1177/01914537221107401>
- Rancière, Jacques. 1999. *Disagreement: Politics and Philosophy*. Trans. Julie Ros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_____. 2001. "Ten Theses on Politics." *Theory & Event* 5(3).
- Tønder, Lars and Lasse Thomassen, eds. 2005. *Radical Democracy: Politics between Abundance and Lack*.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Verli, Dorina. 2018. "Reforming Democracy: Constitutional Crisis and Rousseau's Advice to Geneva." *Review of Politics* 80, 415-438.
- Wolin, Sheldon. 1994a. "Fugitive Democracy." *Constellations* 1(1), 11-25.
- _____. 1994b. "Norm and Form: The Constitutionalizing of Democracy." In J. Peter Euben, John R. Wallach, and Josiah Ober, eds. *Athenian Political Thought and the Reconstruction of American Democrac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